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0

제출년월일: 2026. 9. 23.

제 출 자: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안전 및 범죄예방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5호)

나.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08. 27. ~ 2026. 09. 16. (20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 평가 :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 비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등)”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창업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예방 사업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방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등)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창업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예방 사업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방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의안 시행에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팀 행정6급 정유리(2155-5353)

〈 의안 소관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	(02) 2155-5353